살인

[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9. 15. 2011고합79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조남철 외 1인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더펌 담당 변호사 이정훈 외 1인

【주문】

]

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.

【이유】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